

# 『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,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(안 제4조)
  -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시민만족과, 도시과 및 건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,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